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19년 03월 19일

다산동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**	박** 1945-05-26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5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03-19
김**	김** 1974-06-21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가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03-19
정**	정** 1989-04-23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가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03-19
용**	용** 1974-05-15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마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9-03-19